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2호, 2025. 7.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제3조(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

제3조의2(공사업 상속신고 관련 서식)

제4조(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서식)

제5조(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제6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제7조(사용전검사 관련 서식)

제8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9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제10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2호, 2025. 7. 1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3조의2(공사업 상속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 8. 19.]

**제4조(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서식)**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①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7조(사용전검사 관련 서식)**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8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유지보수등에 대한 계획 수립
2. 유지보수등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 역할 및 업무내용
3. 유지보수등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 유지보수등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 그 밖에 유지보수·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유지보수·관리기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8.]

**제9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2. 용도변경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3.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 계약의 해지일 또는 위탁 계약기간의 종료일

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8.]

**제10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사본 및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②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경력수첩 발급번호

③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제2항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8.]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8.]

**부칙** <제152호, 2025. 7.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별지 제4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 [별지 제7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 [별지 제9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 [별지 제14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신고대장